

조달청, 평가위원 모니터링 강화로 평가 신뢰성 높인다

부적정 평가위원 제재 강화, 건설기술용역까지 모니터링 확대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「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하고,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조달청은 2024년부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평가과정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하는 등 공정한 평가체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.

다만, 부적정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기준의 실효성 강화, 모니터링 대상 확대, 모니터링 운영 절차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체계적 정비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모니터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.

이번 개정안에서는 ▲모니터링 평가 대상에 설계공모와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고 성실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, ▲부적합 항목이 전체 항목 중 4개 이상인 평가위원에 대해 제재하던 것을 공정성 항목 중 2개 또는 전체 항목 중 3개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였고, ▲모니터링 평가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절차 등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.

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“평가위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는 공공조달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평가위원 모니터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평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조달청	디지털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	책임자	과 장	김종화 (042-724-7592)
		담당자	서기관	김영연 (042-724-6124)

[인포그래픽] 평가위원 모니터링 이렇게 달라집니다.

평가위원 모니터링 이렇게 달라집니다!

✓ **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개정** ('26. 7. 31. 시행)

개정 전

평가위원 모니터링 대상

- ▶ 우수제품, 혁신제품,
협상계약, LH

평가위원 모니터링 항목

- ▶ 공정성
- ▶ 성실성

평가위원 모니터링 결과

- ▶ [조건] 전체 부적합 항목
4개 이상
- ▶ [기간] 교섭정지 1년
- ▶ [해촉] 교섭정지 2번 → 해촉

개정 후

평가위원 모니터링 대상

- ▶ 우수제품, 혁신제품, 협상계약,
설계공모, 건설사업관리 (LH포함)

평가위원 모니터링 항목

- ▶ 공정성
- ▶ 성실성 – 설계공모, 건설사업관리 평가의견서 성실 작성 추가

평가위원 모니터링 결과

- ▶ [조건] ①공정성 부적합 항목 2개 또는
②전체 부적합 항목 3개 이상
- ▶ [기간] 교섭정지 6개월
- ▶ [해촉] 교섭정지 2번 → 해촉

✓ **공정한 평가의 수호자, 평가위원 모니터링단**

평가위원의 공정성, 성실성을 모니터링하는 위원

조건 ▶ 경력, 전문성, 청렴성

자격 ▶ 중앙행정기관 산하 전문 평가기관 소속직원, 공무원
그 밖에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자

